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관철은가?

일시 : 2017. 4. 27(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

자료집 순서

인사말	2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발표문	5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6
최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13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규제 프리존법의 실제	26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박사	
규제프리존과 정보인권	38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토론회 진행

□ 1부 인사

○ 진행자: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 2부 토론

○ 사회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표(각 15분)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 객석 토론 및 마무리 발언(10분)

인사말

<규제프리존법 반대 긴급 토론회>

인/사/말



2017.4.27

국회의원 윤소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는 것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 법은 재벌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사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동원한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박대통령은 미르재단 모금이 완료된 다음 날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하는데 예산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법, 5대 노동 관련법 처리, 한중 FTA 비준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때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에 노동 관련법 처리와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익추구를 위한 두 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모아주면, 대통령은 재계가 그토록 숙원사업 추진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20대 국회 첫날 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는 물론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대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습니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모금과 더불어 추진된 이 법안은, 그 자체가 뇌물을 통한 거래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뒤를 따라 계속 영리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대기업의 이해를 대신하여 박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통과를 위해 엄청난 압력을 행사했던 두 법안을 폐기하느냐 계속 추진하느냐에 따라 차기 정부의 방향이 설정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어떤 입장인지 각 정당 대선 후보는 명확히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긴급토론회를 준비하신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각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박정희 체제’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을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문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이대로 관철은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최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1. 배경의 문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 첫날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3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원래 19대 국회 막판에 새누리당 강석훈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안종범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강석훈 전 의원이 급작스럽게 19대 국회 막판에 이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재부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¹⁾

그러나 이런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이 규제프리존법의 탄생 과정을 보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구현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경련 소속 17개 대기업들이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맡으면서 설립되었다.²⁾ 그리고 이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제작은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의 회사에 수의 계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운영 지원”을 하는³⁾ 창조경제추진단의 공동 단장 자리에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임명되었다.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들이 각자 수익사업으로 발표한 계획은 대부분 그대로 규제프리존 계획에 포함되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직접 “규제프리존 선정 과정은 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으며,⁵⁾ 실제 2015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사도별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분야 산업으로 선정”하겠다고 명시했다. 역시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1월 28일 보도된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혁신센터는 사실상 규제프리존 ‘추진기구’임을 알 수 있다.

<그림1> 미래부 2016년도 업무계획 발표, 2016년 1월 28일 보도자료

- 1) “[20대국회 입법제언]⑥ 정부도 입법의 한 ‘축…청부입법 관행 고리 끊어야’, 조선비즈, 2016년 11월 28일
- 2) “[2016 국감]최명길 의원 “창조경제 펀드 중 신규 민간 투자 9%뿐, 나머지는 대기업·정부 돈”, 전자신문 2016년 8월 26일
- 3) 창조경제추진단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http://cei.go.kr/info/or>)
- 4) “차은택 씨, 창조경제추진단장 활동…미래부 “창조경제를 지켜라””, 이데일리 2016년 11월 2일
- 5) “‘닭은 듯 다른’ 규제프리존 vs 창조경제혁신센터(상보)”, 머니투데이 2015년 12월 16일

1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

“혁신센터 등 창조경제플랫폼을 공고화하여 성과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한다.”

- ◇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 일자리 창출 지원
- ◇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규제프리존에서 시범·실증
-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상호 윈윈 모델 확산
- ◇ 창조경제 멘토링 지원 강화 및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고도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요구했다.⁶⁾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확답을 해주었고,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⁷⁾

이처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공모에 의해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되었던 정황은 단지 의혹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2. 성격의 문제: 의료사안을 핵심에 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우회 전략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유사하게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기업들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⁸⁾

이는 추진 세력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박근혜의 경제교사’로 불렸던⁹⁾ 안종범과 강석훈은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법 전도사였다. 안종범은 경제수석 당시 “의료 공공성 훼손을 주장하며” 서비

6) “전경련,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 전경련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5년 12월 7일

7)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부터 규제프리존 통과를 강조했으며, 올해 8월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시·도지사 오찬간담회, 9월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 등 여러 차례 규제프리존법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2016년 12월 5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동안 이 규제프리존법을 언급한 것만 32번에 달한다.

8) “규제 프리존 도입... 드론·무인車,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조선비즈 2015년 12월 17일

9) “안종범 정책조정, 강석훈 경제수석은 누구?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들, 경제정책 쌍두마차로”, 한겨레 2016년 5월 15일

스법을 반대하는 것은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것”이라며 비판했다.¹⁰⁾ 강석훈 전 의원 역시 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김치찌개 끓이는 데 김치를 빼고 끓이자고 하는 것”¹¹⁾이라며 19대 국회 내내 서비스법 통과를 주장했다. 이랬던 이들이 여론이 악화되며 결국 19대 국회에서 의료 분야를 포함시킨 서비스법의 국회통과가 힘들어지자¹²⁾ 급작스럽게 밀어붙인 것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서도 전경련과의 관계가 드러난다. 국정조사와 특검 및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서비스법 전도사였던 안중범은 사실상 전경련과의 협상 테이블이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직접 전경련의 주요 재계 총수들에게 미르-K재단 출연을 압박했다. 미르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출연을 하게 되자 전경련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간 합병 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이 미해결 상태라고 의료분야 규제완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이 본래 원했던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는 불만과 함께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¹³⁾

3. 내용의 문제: 보건으로 분야를 중심으로

3-1. 초법적이고 포괄적인 규제완화

법안 전체로 볼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제3조와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허용’함을 원칙(“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하는 제4조이다. 즉, 다른 세부조항을 아무리 조정한다고 해도 규제프리존법 통과 자체만으로 초법적이고 포괄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 장관에게 규제프리존의 지정, 해제 및 해제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제7조~제12조), 기재부 장관 주도 하에 모든 규제완화가 진행된다. 이는 경제적 관점만으로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해서도 안 되는 의료, 농업, 환경 분야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일부 지역에 특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안에서 다루는 규제완화는 전국 주요 도시가 거의 다 포함되는 “규제프리존 내”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설령 지역을 선별해 특정 분야의 사업만 허가한다 하더라도 의료, 제약, 정보통신 등 골장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서 특정 분야의 사업이 규제완

10) “안중범 “野 서비스업법 반대는 술잔에 비친 뱀그림자”, 동아일보 2016년 3월 3일

11) “여, “서비스발전법 반대 의원들 낙선운동 해달라”, 서울경제 2016년 1월 21일

12) “국민 절반 “서발법에 보건의료 포함 반대”, 의협신문 2016년 4월 7일

13) “전경련,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 전경련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5년 12월 7일

화로 ‘성공’하게 되면 이는 곧 역차별 문제를 낳아 규제프리존의 전국화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지역전략산업’이란 말은 허울일 뿐이며, 전국적 규제완화를 위한 전초기지에 다름 아닌 것이다.

3-2. 기업실증특례제도

제13조와 제14조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한마디로 기업단위로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즉, 법안의 다른 조항이 삭제된다하더라도 이 기업실증특례제도 하나만으로 사실상 모든 규제 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몇몇 재벌기업들에게 기업실증특례를 적용해 주면 그것만으로도 한국 전체에 미치는 규제완화의 영향력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생 사건, 메탄올 실명사건, 옥시 가슴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현재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한 안전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런 후진국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업들의 안전 관리 체계와 이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기업실증특례제도에서 명시한 안전성 검토기간은 30일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성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실증특례제도는, 적어도 OECD 국가 중 십년 넘게 독보적인 산재사망률이 1위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판매 허가된 가슴기 살균제로 2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나라에서 실시할 제도는 아니다.

3-3. 신기술기반사업

제15에서 제18조에 이르는 신기술기반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항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시범사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실증특례제도보다 더 후퇴해 ‘신기술기반사업’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의료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은 바로 줄기세포치료, 면역세포치료, 제대혈 관련 제품과 같은 이른바 ‘첨단재생의료’ 분야이다. 현재 이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들은 식약처나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국정농단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실제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 주도의 규제프리존법 하에서는 이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이 간과되고 효용성이 과장되어 더욱 무분별하게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미 줄기세포치료제로 인한 사망사고를 겪은 바 있고,¹⁴⁾ 허술한 제대혈 관리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¹⁵⁾ 이를 정비하기는커녕 규제를 더 완화해준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꼴이다.

14) 日本厚生労働省, 「第1回再生医療の安全性確保と 推進に関する専門委員会でご指摘いただいた事項について」, 2012年9月26日, p.7

15) “수천만 원짜리 주사, 부유층 포함 ‘1천여 명’ 시술”, MBC news 2016년 3월 2일; “[단독]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 의혹 인정...“기증자에 사죄””, 중앙일보 2017년 2월 3일

아울러 이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접근이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고차원적인 의료 기술개발보다 미용을 위한 상업적 개발만을 부추겨 진정 효과 있고 경쟁력 있는 치료제의 개발을 저해한다.¹⁶⁾ 즉, 허술한 규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기술기반사업’은 국제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을 실험 대상이자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저급한 제품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

3-4.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촉진할 조항들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부조항을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는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심각한 의료민영화·영리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대표적 독소조항을 보면,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사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제43조). 즉, 각종 부대사업을 벌이며 VIP들을 끌어들이던 차음보다 더한 영리적인 병원이 전국의 규제프리존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의료영리화·민영화로 가는 고속도로를 내주는 것과 같다.

또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25조).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무허가 의료기기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조항(제31조) 역시 의료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OECD 국가 평균 77%),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이 현재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여당이 19대 국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며, 전경련 역시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 마련’을 요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조항이다.

규제프리존 기획안¹⁷⁾을 보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서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식약처 허가 전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이 허용된다. 또한 “원격의료 시행되면 주요 대형병원이 사업의 주요 주체가 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이 생길 것”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제기되는 등¹⁸⁾ 많은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전격 활용한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아울러 규제프리존에서는 각 개인의 “추가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허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유출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¹⁹⁾

16) Paolo Bianco & Douglas Sipp, “Regulation: Sell help not hope”, NATURE vol.510, 16 June 2014

17) 관계부처 합동,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2015년 12월 16일

18) 김주경,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6.10.28

19) 최근 검찰이 의료정보유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소속 피고들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지누스와 IMS 헬스, 약학정보원 법인에 5,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검찰, 의료정보유출 최고 5년 징역형 구형”,

사실 명시된 것만 이 정도지 첨단 복합, 스마트헬스, 웰니스, 관광 등의 이름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의료 관련 산업에 관한 거의 모든 규제가 시도지사의 권한과 기재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통해 풀릴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만을 위한 규제완화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즉,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할 때, 현재는 제약회사가 위험을 무릅쓴 참여자나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이 제약회사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 모델의 문제: 일본의 전략특구는 성과사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며 규제완화의 “성과사례”로 일본의 전략특구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전략특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일본판 규제프리존인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의료분야에 대한 우려가 큰데, 간사이권 등 의료 분야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나 국내 승인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의료영리화를 차단하는 일본의료의 핵심제도인 혼합진료금지 규정(보험적용이 되는 의료와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함)도 풀어버렸다.²⁰⁾ 현재 도쿄와 오사카, 아이치현, 후쿠오카시에서 특구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다.²¹⁾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아베 정권이 전략특구에서의 규제완화를 발판으로 전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혼합진료 허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국가 전략특구에만 한정할 계획이었으나 규제개혁회의를 거쳐 후생노동성이 일본 전역 100개 병원에 적용시키자고 제안했다. 실제, 2016년 4월부터 ‘환자신출요양제도’(患者申出療養制度)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전국단위의 혼합진료 허용이 시작됐다.²²⁾

5. 결론

이상 살펴보았듯이 규제프리존법은 추진 배경과 그 성격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정 조항을 조정하거나, 지역 및 산업분야를 선별한다 하더라도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는 그 자체로 전국적이고 초법적

헬스포커스, 2016년 11월 7일)

20) 혼합진료(일명 자유진료)가 확대될 경우 병원에서 고가의 비급여 진료 범위가 커지고, 급여 진료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 저소득층이 의료에서 배제될 위험성은 높아지게 된다.

21) 郭洋春, 『國家戰略特區の正体』, 集英社新書, 2016 참조

22) “TPPの影に隠れて、あまり存在を知られていない「國家戰略特區」の罫とは, 週刊女性 2016年9月20日号

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보건 의료 분야에 가져올 피해는 심각하다. 적폐청산이 최대의 과제인 현 시국에서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이 위험천만한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이대로 관철은가?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법

1)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 재벌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제도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규제프리존법은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아래 규제프리존법 제93조 참고).

-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서 언급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제93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추진단의 운영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고 ②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 재벌대기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개별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하나의 재벌대기업과 매칭되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재벌대기업은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함(2017.02). 기획재정부는 규제프리존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의 전담기관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 전담기관의 실제 참여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참여연대 질문>

질의1) 재벌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 답변>

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위해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추진단에는 특별법안 제93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지역추진단에 실제 참여시킬지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 한편, 지역추진단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참여하더라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 강원도의 경우, 규제프리존을 통해 산악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기업과 규제프리존과 관련한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강원도가 작성한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관련 컨설팅 결과 알림 및 규제특례(안) 보완 제출>(2016.03.07. 문서번호 6420829-3695. <https://goo.gl/xuhpUq>) 에 따르면

- 강원도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하여, 2016년 3월 경, 강릉시청 소회의실 등에서 2개 규제프리존과 관련하여 강원도와 강원도 강릉시,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자문위원과 민간기업이 참여한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 시·군 및 민간기업에서 마련한 규제프리존 내 사업계획 및 규제특례(안) 보고 : 6개소(대관령권 3, 태백·백운산권 3) ▲ 규제프리존 초안 검토 및 컨설팅 ▲ 하늘목장, 하일랜드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현장 확인 이며

-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 규제프리존 제도 도입배경, 육성계획(안) 작성 가이드라인 설명 ▲ 규제프리존 범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차별성 등) ▲ 입지·업종에 대한 핵심규제특례(안) 적정 여부 및 추가 발굴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1>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관련 컨설팅 결과 알림 및 규제특례(안) 보완 제출 관련 공문



소득 2배 명품 2배 하나된 강원도

강 원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관련 컨설팅 결과 알림 및 규제특례(안) 보완 제출

1. 산림소득과-2959(2016. 2. 23.)호의 '강원도 지역전략산업(산악관광) 규제프리존 규제특례(안) 보완 제출' 및 산림소득과-3240(2016. 2. 29.)호의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관련 컨설팅계획 알림 및 참석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지난 3.3-3.4(2일간) 강릉시와 태백시에서 관광산업 실무T/F 자문단에서 시·군 및 민간기업의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규제특례(안)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시·군 및 민간기업에서는 컨설팅 결과가 반영된 보완된 규제특례(안)을 확정하여 2016. 3. 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강원도 관광부서(강원발전연구원)에서 최종 규제특례(안) 확정 계획

3. 이와 관련, 강릉시는 대관형 곤돌라·루지 설치사업에 평창군 관할지역 일부가 편입되므로 평창군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라며, 태백시는 가덕산 일원의 산악관광 개발 사업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프리존(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관련 컨설팅 결과 1부. 끝.

강 원 도 지 사

수신자 관공어케달과장, 강릉시장(관광과장), 태백시장(관광문화과장), 평창군수(문화관광과장), 정선군수(문화관광과장), 예코그린 캠퍼스(주)(북장정), 우덕축산(주)(북장정), (주)강원랜드(메포스사업팀)

전달 2016. 3. 7.

강원도 작성. 2016.03.07. 문서번호 6420829-3695.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관련 컨설팅 결과 알림 및 규제특례(안) 보완 제출> 관련 링크: <https://goo.gl/xuhpU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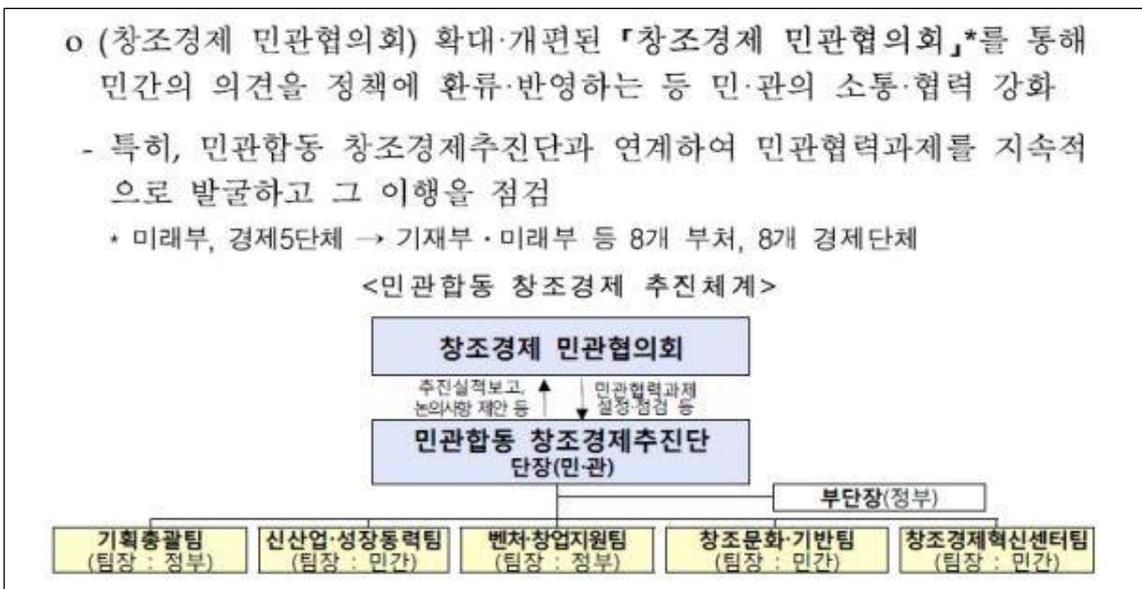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과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제프리존법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이 지역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 확보·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도록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6).

-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 수행하는 등 민간 주도 창조경제 실현의 실행조직으로 운영했는데(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2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민관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이행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표2>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업무보고, p.22

-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3.7.자 보도자료 <창조경제 실현, 민·관이 손잡고 나간다 !!! -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 >를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민간 8개 단체와 8개 정부부처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 과 관련해서는 ▲ 전경련은 미 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대한상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하여 지역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재벌대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주요 사업계획에 있어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함께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의 실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16. 자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지자체와 지역의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주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위 보도자료에서 규제프리존을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3>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중 규제프리존 내용

<p>○ 특히, 지역별로 선정된 2개의 전략산업 중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사업과 연관된 산업이 선정되어,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 발전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됨</p> <p>*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p> <p>※ 규제 프리존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p> <p>○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의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전략산업을 설명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산업계, 혁신센터, 전담기업의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p> <p>* 혁신센터, 전담기업 임원, 지자체, 보육기업 등 15인 내외로 포럼 운영 중</p> <p>○ 추가적으로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프리존 도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과의 논의를 지속 추진 할 예정임</p> <p>* 시도 (부)단체장, 대학, 출연연 등 약 30-40여개의 지역 주요 유관기관 참여(혁신센터장이 간사)</p>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 2015.12.16

○ 미래창조과학부는

▲ 2016년 사업계획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16.6, 특별법 제정)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추

진”이라는 계획

▲ 2017년 사업계획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혁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창출”이라는 제시하고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표4>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민간 참여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 및 자립 기반 구축
 - (혁신센터 기능 차별화) 혁신센터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혁신센터 중점기능과 역할을 차별화
 - 초기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창업성장 단계 및 특화 분야별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
 - (참여확산) 민간 전문가 및 지역 혁신주체들의 참여·협력을 확대
 - 민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가 직·간접 참여* 단계적 확대
 - * (예시) 전문가 채용, 이사회 참여, 사업 위탁운영 등
 - 센터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 추가·보완* 및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네트워킹 강화
 - * 인천(한진) - KT, 울산(현대중) - UNIST 등
 - <중략>
 - 혁신센터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혁신센터 중심의 특화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 지자체 전담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창업기업 실증 신속 지원
 - * 지역특화사업활성화지원사업(72.8억원, 신규) : 시제품제작, 설계지원, 성능테스트등지원
 -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의 소액 무상 이전을 통한 혁신센터 특화분야 창업 및 사업화 후속지원(지역별 2개 이상)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
 - * 지역 내 유관기관(지자체, TP, 연구개발특구, BI센터 등)과 협업 체계 구축 운영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업무보고, p.13 등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

-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9.10.자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이후 운영 현황>을 보면, 향후 5년 간 총 8,174억 원의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9.8. 현재 총 3,575억 원(목표치 대비 44%)이 조성되었고, 359억 원(조성액 대비 10%)이 집행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22.자 보도자료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 성과 발표>를 보면,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급증(보육기업 : 45→509개)하였고” “창조경제 플랫폼 고도화(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항목에서, 투자유치(1,088억 원), 고용창출(238명), 매출증가(289억 원)를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07.28. <2년차 창조경제혁신센터, 빠른 성장과 글로벌 진출 견인>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1,135개의 창업기업, 1,605개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2,834억 원의 투자유치의 결과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에서 약 1,605억 원의 매출이 증가했고 1,35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10.4.자 보도자료 <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 마련>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842개의 창업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3,094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1,4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 창조경제의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신규채용은 2015년 8월 현재 76 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1,443 명이라는 설명이다.

<표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지역별 문제점

구분	대표적 문제점
대구(삼성)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설립목적과 다르게 웨딩업체에 지원한 경우 있어
대전(SK)	한국형 실리콘 벨리 육성하고자 했지만 장아찌 세트 제조업체에 지원
전북(효성)	탄소섬유 산업 육성하고자 했지만, 전통차, 케익(빵집), 가공식품 도매업에 지원
경북(삼성)	스마트 기기 생산 산업지원 통해 지능형 초정밀 가공하겠다고 했지만 소주, 막걸리, 김치, 약주, 건강식품 업체 지원
광주(현대차)	자동차산업 관련 업체 지원한다고 했지만 무알콜, 막걸리, 롯데리아, 미용실 자금 지원
충북(LG)	생명과학, 생활건강, 바이오 산업 투자 설립 목적이어서 그런지 건강기능 식품 업체에 지원
부산(롯데)	다른 지역 업체의 닭고기, 밤, 견과류 제조 업체 지원
경기(KT)	대체적으로 우수
경남(두산)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중공업 산업 지원이지만 저염멸치, 매실음료, 발효콩, 건강주스, 건강식품 지원
강원(네이버)	지원한 87개 업체 중 60곳이 농수산물 업체 편중 지원
충남(한화)	태양광 산업 지원하겠다고 설립됐지만 69개 업체 중 2곳 태양광 업체, 나머지 54개 업체는 농수산물 업체 편중 지원
전남(GS)	석유화학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71개 업체 중 52개 업체가 농수산물 업체지만 설립 취지에 맞게 유통판로 지원됐음
제주(카카오)	실적이 단 5건에 불과
세종(SK)	실적이 단 3건에 불과, 그 중 2곳은 취지와 맞지 않음
울산(현대중)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가장 우수, 하지만 지원한 업체 중 3곳이 설립취지와 맞지 않은 식료품 관련 업체
서울(CJ)	문화산업 창조경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문화산업관련 업체는 단 2곳에 불과
인천(한진)	해운 관련 업체 지원 하고는 있지만 설립취지와 맞는지 의구심이 가는 업체들이 다수

김영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일, 것갈, 미용실, 웨딩업체 등 지원>(2016.10.17.)

○ 김영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일, 것갈, 미용실, 웨딩업체 등 지원>(2016.10.17.)에 따르면, ▲ 현대자동차가 맡고 있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세부 지원내역을 검토한 결과 롯데리아(햄버거)에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무알콜 음료, 막걸리 생산에 자금을 지원하고 일반 미용실에도 자금을 지원 ▲ 삼성이 맡고 있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목적은 첨단 소재·IT부문 선도기업을 육성이지만 일반 웨딩(결혼식) 전문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기계설비 및 중공업 관

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두산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멸치, 발효콩, 매실음료, 건강 식품 등 9개 업체에 판로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충청북도와 LG

-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0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2015.02.04. 출범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1개 기업(스타트업 56개, 중소기업 45개)을 지원하여, 그중 사업적 잠재력을 지닌 기업 30개(스타트업 17개, 중소기업 13개)를 발굴·육성 중이며 이들 기업은 2015년 매출 400억 원, 고용 154명이 증가했다. 출범 시 발표한 대출·보증·투자 펀드 조성 1,500억 원을 모두 완료하여 투자 20억 원, 대출 531억 원, 보증 133억 원을 집행했다.(2016년 1월 현재)

<표6>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LG측 설명



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0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LG는 충북지역 7개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9건, 판로지원 11건(해외5), 특허지원 21건(이전19, 출원 2), 금융지원 15건(융자/보증5, 정책자금10)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 LG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출범하여 특허, 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판로 지원을 통해 56개 벤처기업과 45개 중소기업에게 혁신의 계기를 제공”했고 별도의 펀드를 제외하고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2017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 LG 역시, “충북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101개 중소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5,77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억 원이 증가했고, 매출 증가에 따라 고용인원도 총 154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 지원으로 매출이 400억 원 가량 증가했고 이는 1개 기업 당 4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이다. 지원의 결과인 154명의 신규채용의 경우, 101개의 지원기업이 1개 기업 당 대략 1.5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결과를 4,110억 원의 투자로 15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자리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1인 당 대략 27억 원 상당의 자금이 투자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일자리의 질을 비롯하여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율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산과 롯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3.6.자 보도자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혁신제품 유통·판로, 영화 및 IoT 혁신의 거점으로 우뚝 서다!>를 통해, 2015년 3월 출범 이후 67개 창업·중소기업 지원, 75억 원 투자유치 및 유통·판로 지원 통해 163억 원 매출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당시 역점 분야로 제시했던 ‘혁신상품에 대한 가치제고(Value-Up) 및 국내외 시장진출의 거점 구축’에 노력하여, 전국적으로 145개 혁신상품을 발굴하고 롯데 유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163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성과는 ▲ 145개 혁신상품 발굴에 163억 원의 매출은 1개 혁신상품 당 평균 1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매출로 해석할 수 있다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롯데(드림플라자, OneTV, K-shop), 한화(아름드리샵), GS Shop, 공영홈쇼핑(창의혁신관)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혁신상품이 공동 소싱되게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지원방식의 결과가 ▲ 지역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통채널에게 많은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닌지, 유통채널 확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같은 거창한 제목 하에 재벌유통기업을 매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도 확인해볼 필요 있다.

- 이러한 기획이 과연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자리와 관련해서, 위 보도자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운영 성과사례로 “‘15년 혁신센터 지원기업(삼진어묵, 승인식품 등 15개 업체)의 성장으로 60여개 일자리 수요 발생 및 연계”라는 미미한 수치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

3) 전라남도와 GS 등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6.16.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을 보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최초 1년 동안 ▲ 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 원 매출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 원 매출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표7>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개 스타트업·중소기업 보육 및 지원, 5억원의 투자유치와 111건의 법률·금융·특허 원스톱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성과창출 본격화 ○ 상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통해 농수산 벤처창업 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원 매출 달성 ○ 천혜의 섬·친환경 음식 등을 연계한 웰빙관광상품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원 매출 달성 ○ 고용존 운영을 통한 청년 고용·취업지원 본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

출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 2016.6.16.

- 구체적으로 보면 ▲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관련 사업의 성과로는 “천혜의 섬과 친환경 음식, 유무형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개도 어촌체험 1박 2일(①), 청산도와 건강의 섬 완도 2박 3일(②)등 전남지역 17개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지원하여 4,15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 이는 ① GS SHOP 온라인에 입점, 500만원 매출(‘15.12월) ② GS TV 홈쇼핑에서 1,200콜 접수원관, 2,700만원 매출(‘16.5월) 한 것이다 ▲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는 마**** 기업이 “대통령의 미국과 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56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매주 1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260명의 진로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27명의 청년구직자를 채용연계”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부분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다.

-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생생한 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해본 결과 그 일자리창출 계획이 보잘 것 없으며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가 있다면 그 과실이 재벌대기업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결론

- 그 도입과 운영, 규제프리존법의 실제 내용 등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규제프리존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제출된 규제프리존법에 따라, 재벌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매개로 규제프리존법의 실제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2014.06.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http://cei.go.kr/policy/3/detail>)에 따르면, 창조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존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구성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드러난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이 과연 위와 같은 창조경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 취지는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제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 등 설립 이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는 미미하며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미한 성과를 도리어 규제프리존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주장도 있으나 부산 등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드러난 결과가 대규모의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사업인지 의문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재벌대기업에게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규제 프리존법의 실체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박사

1. 규제프리존법의 개요 및 경과

1.1 규제프리존법의 개요

이 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 규제프리존에서 해당 시·도 지자체와 규제프리존에 들어온 대기업이 합의해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특위가 심의/의결하여 해당 존의 해당 산업에 대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적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규제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모든 권한의 최종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규제프리존 지정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규제 방식(네거티브 시스템) △규제특례 △추진체계를 6장 95개 조문을 담고 있습니다. 법의 핵심인 78건의 규제특례는 일반특례, 입지특례, 산업별 특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일반특례와 입지특례는 26가지나 되고 전국 모든 규제프리존에서 적용됩니다. 산업별 특례는 각 지역 지역특화산업과 연결돼 있어 해당 시도의 규제프리존에서만 적용됩니다.

일반특례는 △프리존의 대기업이 낸 특허를 다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들보다도 먼저 심사해주는 ‘특허 우선 심사’를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이나 보호지역 등 국공유 재산인 토지나 물품의 임대와 매매 등에 관한 특례를 보장하며 △프리존 내 사업자인 대기업 등에 재정 및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입지특례는 △프리존 내 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고 △환경영향평가도 평가기간과 횟수를 줄여주며 △개발이 불가능했던 각종 보호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정제한요건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특례는 각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 △심사기간 단축 △등록기준과 지정요건 완화 그리고 허가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들을 통해 프리존 내의 대기업 사

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가 보장됩니다.

1.2 규제프리존법의 경과

강석훈 의원 대표로 새누리당 13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법은 새누리당 지역 공약으로 4.13총선을 치렀고, 법인의 이미용업계 진출 허용 등의 사유로 미용업계의 반발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폭망했고, 20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일 첫번째 법으로 새누리당의원 전원과 국민의 당 3인의 의원으로 재발의 되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전경련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법으로 심각한 독소조항이 대부분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의 법안심사가 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유보된 채 당 차원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시로 법의 통과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규제프리존법이 전경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인 이유

-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대책 등 총 9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중 7차례가 2014~2015년에 집중되었습니다. 정부와 전경련을 중심으로한 경제계가 참여한 회의였습니다. 회의의 핵심내용은 ‘대기업들의 청탁’이 ‘현장 대기중 투자프로젝트’이름으로 주요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청탁은 주로 수도권외의 공장입지가 부족하자,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여왔던 녹지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농지, 보전산지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 부담금의 면제다. 그리고 보호지역 중 관광 개발하고 싶은 산지 등에 대한 규제완화였습니다.

-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경련 등의 규제완화 요구가 구체화되자 2014년부터는 공적 규제에 대한 과도한 경멸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규제 총괄업무를 진행하는 국무조정실에게는 ‘진돗개 처럼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때까지 놓지않은 진돗개 정신 강조’ 처부술 원수,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이를 드러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다. 불타는 애국심으로 규제에 대한 사생결단을 외쳤다.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대책 등 7차례의 회의 내용은 재벌기업들의 청탁을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VIP 핵심추진 사업으로 계속 추진사항을 점검한 것이다.

- 2014년 6월 전경련은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2개월 후 정부가 배끼다싶이 하여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악관광활성화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이 배경에는 강원도와 전경련이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산악관광관련 인프라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혈안이되어있었다. 이미 200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신청 단계부터 재벌들과 최순실 일가는 평창 올림픽특구 예정지 땅을 대거 매수한 상태였고 최순실도 각종 이권개입에 바빴다.

6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전후로 김기춘의 부당인사 개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 사건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시 2개월 뒤인 10월30일 박근혜는 직접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 '환경부는 준비가 되었으니 설악산 케이블카를 좀 빨리 시작했으면 하다'고 부탁까지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설악산케이블카 반대운동을 지속해왔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로 친환경올림픽 개최를 요구했다. 이는 국민 70%의 지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지만 박근혜는 12월 분산개최를 반대를 공식 표명했다.

- 2015년,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규제를 덩어리 규제라고 꼭 집어 말했고, 관심이 큰 규제라하면서 2015년에는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으니 과감하게 단두대에 올려서 한꺼번에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박근혜의 자신감은 그린벨트 해제(5.6)와 해안관광 특구법 개정(5.19),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조건부 승인(8.28)됐고, 산악관광특구법 입법예고(9.4),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규제(12.16)완화 등이 추진된다.

미르재단설립(2015.10.27)이 추진된다, 이날 박근혜는 국회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2016.1.13)이 설립된 같은 날 박근혜는 대국민 담회 및 기자회견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개혁법(구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그리고 2016년 1월 18일 전경련과 같이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2016년 박근혜의 공공규제 완화를 위한 재벌청탁법인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2.17) 에서 박근혜는 다시 규제철폐에 대한 고삐를 잡았다. 일단 모든 규제를 물에빠뜨리고 꼭 살려 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내도록 규제를 사전예방측면에서 사후처리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간의 모든 규제완화 내용을 규제프리존법에 담았다.

3. 사회적 공적규제의 근간 해체

3.1 규제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3대 핵심 독소조항

규제프리존법은 78개 역대 최대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방식’ 일명 네거티브 규제완화 시스템을 기본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존 규제라도 원칙적으로 모두 해제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개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살려야 할 것만 건지라!”는 발언의 진의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사전예방원칙을 포기하고 모든 규제를 풀어 규제프리존 내 전략산업에 사전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78개 특례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더라도 네거티브 규제완화 시스템에 의해 규제를 없애는 일은 모든 규제프리존에서 행해지는 산업과 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이른바 ‘3대 규제혁신제도’에 의해 가속화됩니다.

먼저 △신속회신제도는 추진 산업과 사업에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기업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신기술기반산업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질의 후 30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도록 하고 만일 기한 내 회신이 없다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실증특례는 제품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정부가 관리감독, 통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자체 실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신기술과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만일 기업이 안전하다고 자체 실증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30일 이내에 검증하지 못한다면 신속회신제도로 인해 기업이 자체 실증한 내용이 수용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업실증특례를 받은 제품의 실질적인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신기술기반사업 제도입니다.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백히 국민과 자연을 신기술과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상의 3대 규제혁신제도가 불러올 가능성 높은 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GMO를 이용한 가공식품,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한 약품 등 규제프리존 이외 지역에서는 금지된 제품들도 ‘3대 규제혁신제도’에 의

해 충분히 상품화될 수 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상의 환경보건사고 발생 가능성도 생깁니다. 현재 보호지역에 행위제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4. 공정한 시장질서의 해체

4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받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며, 제품원가에 반영되는 임대료는 물론, 기업의 토지자산증식 특혜 등 재벌경제 체제는 더욱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4.1 벤처기업, 중소기업 보다 우선 특허심의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전략산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수의 R&D사업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의에 있어서 벤처기업,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보다 우선하여 특허심의를 받고, 연구소설립에도 타 기업들보다 절반의 주식보유비율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4.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면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법에 명시된 사업의 목적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적별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하고 매출액이 없어도 중대한 범법행위로 20억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 없이도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구지 과징금부과 조항까지 면책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마치 경제사범으로 대기업총수가 감옥에 가면, 경제가 어렵다며, 사면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고 돈벌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4.3 솜방망이 처벌

가습기살균제 사고에서 옥시처럼 기업이 거짓으로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3천만원의 벌금, 신기술기반산업의 피해예방을 위한 보험과 공제조합에 가입을 안한 경우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만 내면 된다.

4.4 자산 증식 특혜 및 배타적 지원으로 인한 역차별

규제프리존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공장과 사무실 부지도 헐값에 제공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도 세금으로 국가가 해준다면 제값 다 내고 기존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만 손해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미분양 지방공단이 많은 마당에 신규로 규제프리존에 산업단지를 만들면 국가로서는 중복투자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분양 지방공단은 이미 교통, 상하수도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사실상 추가적인 입지 규제도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개발된 지 오래돼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방공단도 많습니다. 이들 기존 공단의 재활용과 미분양 지방공단을 이용보다 규제프리존 산업공단 입주 기업에게 입지특례를 통해 부동산수익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것은 지역전략산업체로 선정된 대기업과 그 대기업과 매칭되는 일부 중소기업 등 소수의 특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전형적인 역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짠 지가를 고려할 때 전국의 10퍼센트 미만 보호지역들에 들어설 규제프리존 공단들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5. 검증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3대 독소조항

규제프리존법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박근혜 4년 임기중 전경련의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해묵은 선심성 반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면제, 주민알권리보장이나 환경연향평가 면피용으로 만든 청탁법이다.

5.1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위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그 대상이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완화된 현 국가재정법(2014년)에 따르면 면제조항 많다.

하지만 그나마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1월, 5개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당해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1월 신규사업 포함)으로 재정지출이 500억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전략산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신규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의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중앙관서의 장이 신규사업포함, 중요 계속사업에 대으로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사업, 또는 1월까지 반영된 중요계속사업보다 그 중요성이 커서 먼저 예비타당성 평가를 해야 할 근거로는 매우 궁색하다. 더욱이 성공적인 지역전략산업 추진을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내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아 추진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지역에 관한 환경비용편익분석이 되지 않고 단순 재무분석에 그칠 경우 보호지역의 가치가 저평가의 우려가 높다.

5.2 환경영향평가 특례

규제프리존법은 전략영향평가 협의 의견 통보를 현행 최장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60일에서 45일로 단축했다. 서류의 보완 요청을 1회로 한정하고, 환경영향을 연2회 이하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제프리존에 개발되는 사업들은 타 일반사업에 비해 기업실증특례로 안정성 검증이 미흡하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보호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4개월 조사가 기본원칙이다. 대기영향, 자연생태 등의 영향은 계절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근거도 없이 2회로 한정된 것은 환경영향평가자체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면죄부로 여긴 것이다.

5.3 공청회관련 특례

규제프리존법 제75에 따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간소화법)’을 준용하게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아닌 간소화법 제9조2항 및 시행령7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안정성이 불분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프리존의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에 대해 사업 승인신청 13일 만에 이들 계획 등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이 관련 진술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다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다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6. 규제프리존법과 4차산업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술 창업 활성화, 민간의 기술혁신, 성장동력 발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재벌들이 과학기술기본법이 아닌 규제프리존법을 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 사회문화 윤리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즉 기술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다.

둘째,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할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셋째, 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 지역기술혁신 등 관련 정책의 조정 예산의 운영 등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원은 직무상 형법상, 뇌물수수, 알선 등 공무원 수준의 강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정할 수밖에 없다.

최근 보험사와 통신사, 헬스케어 장비 분야의 윤리, 환경 등의 갈등을 조정하고 보호하기 보다는 대기업들이 과학기술기본법을 피해 개인의 건강 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수집후 이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로펌을 앞세워 규제완화에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통신과 결합한 헬스케어장비를 통해 확보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보험회사가 악용한다면, 보험사는 대박이 나고,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보험을 들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통신사와 헬스케어 업체는 수집한 정보를 비싸게 유통시킬수 있다.

7. 전 국토의 10%인 보호지역 보전의 법적 국가 책무 외면

규제프리존법의 26개나 되는 일반특례와 입지특례 규정 중에 그러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들이 대거 들어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농업진흥지구 등 기존에는 절대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들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이들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개발 부담금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지가가 싼 보호지역의 특성상 입주 기업은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보호지역 특성상 상하수도나 전력설비 등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에 대한 개발 부담은 정부가 혈세를 들여 기반설비를 해주도록 돼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보호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규제프리존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존법이 주거지역과 공공시설 등 산업시설을 보조하는 복합용지의 비율을 50퍼센트로 제한하던 것을 75퍼센트까지 풀어주도록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복합용지가 넓어질수록 개발 기업의 수익이 높아지니 이것 또한 지가 차익을 기업이 가져가게 하는 특혜입니다.

산업공단 입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광, 농업, 산악관광 등의 산업에 대한 입지특례도 보호지역 해제나 입지규제 완화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에 조성되는 관광단지에 단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구를 해제해 농기계산업체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하며, 백두대간까지 산악관광지구로 묶어 산정에 관광호텔을 세우고,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규제프리존의 해양관광산업 특례로서 국가지정문화재(부산 태종대)에 대해서도 건축물 개축과 재축을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

과 초지, 평지, 갯벌간척지 등의 그 어떤 보호지역조차 가리지 않고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전략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기업이 택한 입지가 보호구역 등지의 국유재산일 때 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싸게 사용, 임대,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에서 기업은 입지에 관한 무소불위의 선택권과 이익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8. 농업, 숙박, 화장품분야 규제완화

8.1 농업

건국 이래의 농업의 원칙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허물고 대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기업집단, 그룹)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합병하면 그 농업회사의 그룹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하도록 해주고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위탁경영하도록 해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해 그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제한을 완화해주고 △임대기간도 연장해주는 등등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새만금 규제프리존에 국한된 일이라지만 이런 선례가 생긴다면 이를 빌미로 전국적으로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갖춰진 농업진흥지역을 지역전략 산업을 위해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대기업에 의한 투기적 농지 소유 확대와 농지 축소, 식량과 환경기능 축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8.2 숙박

학교 앞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한 경우만 가능할 정도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에서는 시·도 조례로 통과되면 허용될 수 있어 교실과 운동장의 일조권 침해, 면학 분위기 침해 등 학생들의 생활환경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교육단체들이 이 법의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8.3 화장품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을 자율로 정해 운영이 가능한 조항도 문제입니다. 비록 규제프리존에서만 그런 특례를 적용해 자율 기준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일지라도 그 유통은 역시 전국적으로 이뤄지므로 실질적으로 규제프리존을 벗어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화장품 정보를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허용한 조항도 문제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전성분표시제 요구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막는 조항입니다. 미국에서

GMO 표시제를 바코드로 하도록 연방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져 시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다고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9. 한미FTA 와 규제프리존법

FTA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 제소권’ 조항은 환경, 공중보건, 토지이용의 공공성, 주거 안정을 침해하는 사항일 때는 보호받을 수 없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들을 ‘내국인 대우’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일 한국 정부나 기관, 기업, 개인 등에게 허용되는 권리라면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에 해외 투자기업들의 진출도 명목상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규제프리존이 국내 주요 대기업과 지역 풀뿌리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지만, 이익을 좇는 영리기업의 생리상 좋은 조건의 파트너를 마다할 리 없으므로 해외 투자기업의 규제프리존 진입을 막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생태계가 지역의 자생적 중소기업 위주가 아니라 대기업과 대기업의 하위 파트너인 지역 중소기업, 해외 투자기업과 해외 투자기업이나 자본이 관련된 기업, 그 삼자의 복합체로 단순화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국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골목상권은 말 그대로 공중분해될 우려가 큼니다.

10. 결론

일단 규제프리존법이 작동하기 시작해 지역전략산업체로 선정된 대기업이 규제프리존에서 기업활동을 시작하면 역내의 모든 사회권력이 해당 대기업에 집중되는 일을 현실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질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해당 대기업에 매칭된 지역 자생의 중소기업들, 그들과 연관된 지역의 경제조직들이 대기업의 지배력 하에 들어갈 것이고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지역 전체가 그 네트워크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규제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모든 권한의 최종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기업의 권한과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 자체가 설계돼 있어 일단 법이 시행되면 누구도 지역전략산업 복합체의 정점에 선 대기업을 막기 어려워집니다. 말 그대로 지역 전체를 규제프리존에 들어간 대기업의 손에 맡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견제보다 특혜를 특례로 규정한 법입니다. 과속이 가능한 슈퍼엔진을 단차에 자전거나 달 브레이크를 달았으니 사고는 필수지만 대책은 전무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이 법은 사전예방이 아니라 사후정비의 원칙으로 규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

다. 문제가 생겨 사후정비를 한다 해도 사후 약방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선의 대책은 이 법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것입니다.

※ 본 원고는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와 함께사는 길 (2017.5)이 공동으로 집필한 <재벌 특혜지구의 탄생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민 낮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과 정보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 (자율주행차)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 (영상정보)

제39조(「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 (사물인터넷)

제4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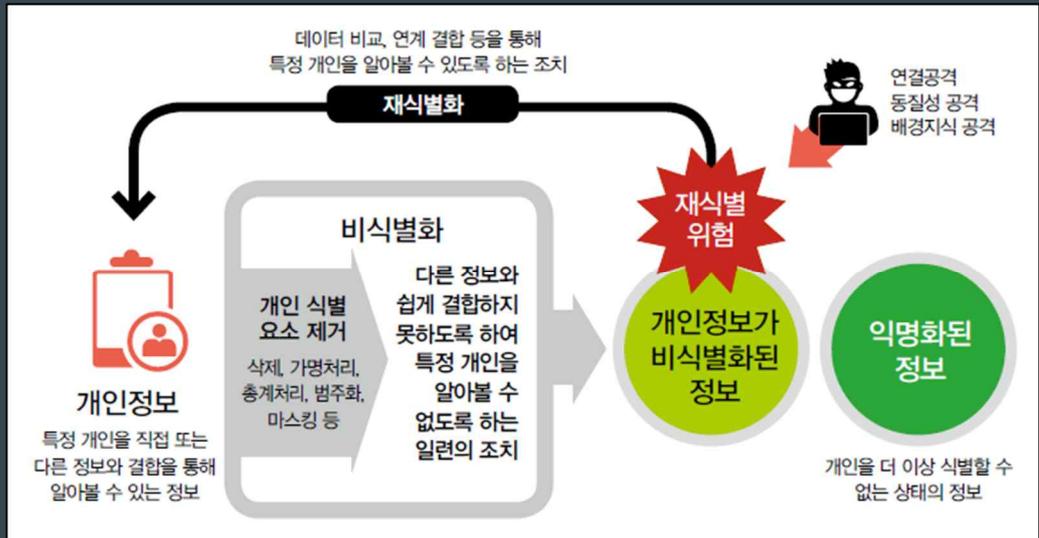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역내사업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내사업자의 지정방법, 관리방법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과 비식별화의 수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식별화란

“ 개인정보와 익명정보 사이 ”



- 2014. 12.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빅데이터와 비식별화

A병원 환자정보 → 땡땡땡 처리

(*) 4-익명성 모델에 의해 비식별된 가상사례
 (**) 이미지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12.

	준식별자			민감한 정보
	지역 코드	연령	성별	질병
1	130**	< 30	*	전립선염
2	130**	< 30	*	전립선염
3	130**	< 30	*	고혈압
4	130**	< 30	*	고혈압
5	1485*	> 40	*	위암
6	1485*	> 40	*	전립선염
7	1485*	> 40	*	고혈압
8	1485*	> 40	*	고혈압
9	130**	3*	*	위암
10	130**	3*	*	위암
11	130**	3*	*	위암
12	130**	3*	*	위암

빅데이터와 데이터결합 (가상사례)

	준식별자			민감한 정보
	지역 코드	연령	성별	질병
1	130**	< 30	*	전립선염
2	130**	< 30	*	전립선염
3	130**	< 30	*	고혈압
4	130**	< 30	*	고혈압
5	1485*	> 40	*	위암
6	1485*	> 40	*	전립선염
7	1485*	> 40	*	고혈압
8	1485*	> 40	*	고혈압
9	130**	3*	*	위암
10	130**	3*	*	위암
11	130**	3*	*	위암
12	130**	3*	*	위암

	이름	지역 코드	연령	성별
1	김민준	13053	28	남
2	박지훈	13068	21	남
3	이지민	13068	29	여
4	최현우	13053	23	남
5	정서연	14853	50	여
6	송현준	14850	47	남
7	남예은	14853	55	여
8	성민재	14850	49	남
9	윤건우	13053	31	남
10	손윤서	13053	37	여
11	민우진	13068	36	남
12	허수빈	13068	35	여

A병원 환자정보가 B보험회사에 팔려

B보험회사 고객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빅데이터와 데이터결합 (가상사례)

	준식별자			민감한 정보
	지역 코드	연령	성별	질병
1	130**	< 30	*	전립선염
2	130**	< 30	*	전립선염
3	130**	< 30	*	고혈압
4	130**	< 30	*	고혈압
5	1485*	> 40	*	위암
6	1485*	> 40	*	전립선염
7	1485*	> 40	*	고혈압
8	1485*	> 40	*	고혈압
9	130**	3*	*	위암
10	130**	3*	*	위암
11	130**	3*	*	위암
12	130**	3*	*	위암

	이름	지역 코드	연령	성별
1	김민준	13053	28	남
2	박지훈	13068	21	남
3	이지민	13068	29	여
4	최현우	13053	23	남
5	정서연	14853	50	여
6	송현준	14850	47	남
7	남예은	14853	55	여
8	성민재	14850	49	남
9	윤건우	13053	31	남
10	손윤서	13053	37	여
11	민우진	13068	36	남
12	허수빈	13068	35	여

“B보험회사 고객 이지민씨는 고혈압 환자”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의 위험성

미국 백악관 빅데이터 기술보고서 (*REPORT TO THE PRESIDENT BIG DATA AND PRIVACY: A TECHNOLOGICAL PERSPECTIVE*, 2014. 5.)

빅데이터 처리가 확산될 근미래에 비식별화와 같은 기술적인 보호조치로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은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2015. 10.)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벌려는 동기가 강해짐에 따라 재식별화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기존의 비식별화 조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비식별조치 결과의 유용성 상실을 측정하는 표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와 비식별화

국내 법률에 근거가 없는 '비식별조치' 개념 도입 (행정부 가이드라인)

나. (비식별 정보의 활용)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추정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 동의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16. 6. 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현행법률 위반 논란 → '비식별조치' 조항 법정화 추진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정부와 빅데이터

개인정보 규제완화

- (현행) ① 개인정보 범위 확대 해석 가능성으로 신규 사업 진출 애로, 비식별화 조치의 적정성 판단 곤란
② 엄격한 사전동의 규정으로 다른 용도로의 활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 (개선) ① 범정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법률해설서 마련
② 사전동의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 ⇒ (개선효과) 통신·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 가능

- 2016. 5. 18.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국가인권위원회 (2016. 10.)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식별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로 복원 또는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정보로 간주하며, 비식별 조치에 대한 구체적 개념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7. 1.)

-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의결)

□ 배경

-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identifyability)을 없애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 중으로 명칭 및 개념 정의가 정립되지 않아 인식과 해석 및 국내외적 의사소통을 저해함
- 빅데이터 활용, 공공정보 공개 등 개인정보보호 핵심 이슈에 관한 명칭 및 정의를 입법 초기 단계에서 국제적 통용성(interoperability)을 갖추도록 정립이 필요함

□ 내용 : ‘익명처리/가명처리’도 용어 통일

(1) 익명(정보)/가명(정보) 사용

- 우리나라에서 이미 ‘익명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익명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가 법제화되어 사용되고 있고,
- 대부분의 국가(미국 제외)가 ‘익명(anonymisation)/가명(pseudonymisation)’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비식별(de-identification)’은 ‘익명’과 ‘가명’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의미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음

비식별화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식별이 가능한 비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권 등이 보장되어야 할 개인정보 유럽, 일본에서는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비식별화는 안전하지 않음. 빅데이터 시대 기술이 발달할수록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재식별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비식별화 등 정부가 지정한 특정한 ‘기술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 동의권을 박탈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을 면책하는 것은 위험적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약학정보원 등은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4천4백만 명 국민의 처방정보를 당사자인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미국 빅데이터 기업인 IMS헬스에 판매하였으며, 현재 형사재판에서 암호화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하버드대 연구진이 IMS헬스에 판매된 한국인 주민번호의 암호를 성공적으로 해제하여 우리 국민을 충격과 부끄러움에 빠뜨렸음

정부,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 개방하겠다는데...

‘암호화된 주민번호’ 너무 쉽게 풀렸다

정부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암호화 등 비식별 조치해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에서 암호화된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100% 해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

미국 하버드대팀, 이미 지난해에 2만3천명 처방전 암호 100% 해제
“한국 주민번호 생일·성별 담겨 프로그램 몇번 돌리니 쉽게 풀려”

이드라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암호화)하면 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

처럼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흩어져있는 데이터들이 연결돼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비식별화의 문제가 확인된 이상 전

- 한겨레
2016. 9. 25.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매매

홈플러스, IMS 헬스, 롯데홈쇼핑 등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 증가

“고객들은 몰랐다” - 알 권리와 동의권 무력화

소비자들과 이용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누적

유엔 인권이사회 (2017. 3. 22.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특별결의안)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가 상당히 증가함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재사용, 판매, 다목적 재판매하는 데 대해 개인들이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처리는 그 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음. 규제프리존에서 수집된 국민 개인정보가 전국과 전세계에서 이용, 제공 및 심지어 매매될 수 있음

4차 산업혁명?

2017년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4차 산업혁명 거론하고 있으며 규제프리존법의 새로운 추진 명분이 되고 있음

클라우드 슈밤 -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의 기술 혁신이 그 진행 속도와 범위, 그리고 과학기술 융합 측면에서 파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

제레미 리프킨 - 제4차 산업혁명이란 없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소개된 기술이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컴퓨터, 디지털 기술의 연장선

기술결정론?- 우리 사회가 기술 혁명에 의해 불가피한 미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

규제 당국을 향한 정치?- 기술에 의해 노동의 본질이 바뀌었는데 고용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국가에 압력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 탑승자의 위치·생체·운행정보 및 외부의 차량과 위치정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부응
①투명성 ②소비자 선택권 ③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④정보 보안 ⑤비례적 정보이용 등 원칙천명
개인위치정보는 민감정보로서 당사자인 위치정보주체 동의 필요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근처차량 등의 위치정보는 현재도 동의없이 수집가능

자율주행차량 탑승자의 개인정보는 동의받아 수집가능. 민감정보는 특히 명시적 동의 필요.

자율주행차량 운행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더욱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 행사 보장해야

따라서 관련법률 배제와 면책은 매우 위험

오히려 해킹 및 유출 사고 등 위험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익명화, 수집보관 최소화, 프라이버시중심 설계 의무화가 필요

사물인터넷

유럽연합은 사물인터넷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WP29, 2014)

- 사물 인터넷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많은 사물인터넷 관계자들은 총계값만을 필요로 하고 사물인터넷 기기가 수집하는 원본 데이터(raw data)가 필요하지 않다. 정보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한 후 원본 데이터를 가능한 한 빨리 삭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원본 데이터 수집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지점에서 삭제해야 한다.(정보가 처리된 스마트기기 자체에서 처리후 삭제하는 등)
- 모든 사물인터넷 관계자들은 프라이버시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이용자 권한강화는 사물인터넷 맥락에서 필수적이다. 정보주체와 이용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미래 신기술과 개인정보 규제완화

유럽연합은 빅데이터 산업이 ▲투명성, ▲이용자 통제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및 설정(Privacy by design and by default), ▲책임성이라는 4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EDPS, 2015)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2016)을 제정하여 미래 신기술로부터 정보주체 이용자-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신설 (빅데이터 로직에 대한 알 권리 및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규제당국의 책무는 기업에 대한 비식별화 면책으로 소비자와 이용자 모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알고, 선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에 있음

끝